

제 정	2000.04.20.
개 정	2026.04.09.

감사위원회 규정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식회사

감사위원회 규정 [2026.04.09.]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관계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에 설치할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 운영, 권한 및 책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구성

제 2 조 【선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상법 등 관계법령 및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들 가운데서 선임하되, 관계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 3 조 【구성】

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하의 이사로 구성한다. 단,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독립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중 1명 이상은 관계법령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서 한다.

제 4 조 【위원장】

1.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독립이사 중에서 선정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2.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해임 및 충원】

1. 위원의 해임은 상법 등 관계법령 및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2. 위원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제 3 조의 위원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이 합치되도록 한다.

제 3 장 회의

제 6 조 【회의의 개최】

위원회는 매분기 1 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 【소집절차】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를 정하고, 늦어도 7 일 전에 이를 각 위원에게 문서, 전자문서, 모사전송방식, 구두, 기타 발송 및 착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8 조 【결의방법】

1.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유·무선 통신 장비를 사용하여 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다.

제 9 조 【의사록】

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 장 업무범위 및 책임

제 10 조 【권한】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업무감사
위원회는 이사회 및 대표이사 등이 회사업무 전반에 걸쳐 행한 업무진행 전반을 감사할 수 있다.
2. 영업보고요구 및 업무재산 조사
위원회는 매분기 및 연간 경영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언제든지 이사 및 직원에 대해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3. 이사보고의 수령
이사는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4. 자회사에 대한 조사

모회사의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5.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6. 주주총회 소집청구

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7. 전문가의 조력

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8. 외부감사인 선정 및 회사에 대한 해임, 변경 요청

9.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10. 기타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에 부여된 사항에 관한 권한

제 11 조 【의무】

위원회의 책임은 다음 각 항으로 한다.

1. 선관주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2. 주주총회에 대한 조사보고 의무

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3. 이사회에 대한 조사보고 의무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4. 감사록의 작성 의무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5.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의무

위원회는 주주총회일의 6 주전에 이사로부터 제출받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2 주전까지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감사보고서에는 상법 제 447 조의 4 제 2 항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외감법상의 의무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의무

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기타사항

제 12 조 【간사】

1. 위원회는 별도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내에 간사를 두어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사무를 관장한다.
3. 위원회의 간사는 감사지원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 13 조 【경비】

위원회의 회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제 14 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부 칙 (2000.4.20.)

제 1 조 이 규정은 2000 년 4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제 2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9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고 당해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아니한 상근감사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감사위원회 위원중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상근감사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본다.

부 칙 (2002.2.28.)

제 1 조 이 규정은 2002 년 2 월 28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2012.12.11.)

제 1 조 이 규정은 2012 년 12 월 11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2016.10.11.)

제 1 조 이 규정은 2016 년 10 월 11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2018.12.17.)

제 1 조 이 규정은 2018 년 12 월 17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2020.12.21.)

제 1 조 이 규정은 2020 년 12 월 21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2023.09.26.)

제 1 조 이 규정은 2023 년 09 월 26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2024.03.26.)

제 1 조 이 규정은 2024 년 03 월 26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2025.12.24.)

제 1 조 이 규정은 2025 년 12 월 24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2026.04.09.)

제 1 조 이 규정은 2026 년 07 월 23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